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유정희 의원 외 9명
- 나. 의안번호 : 제135호
- 다. 발의일자 : 2018. 9. 10
- 라. 회부일자 : 2018. 10. 1

2. 제 안 사 유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미세먼지(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개정되는 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민감군 주의보의 발령기준이 동일하여 민감군 주의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의2 및 별표 4)
- 나. 개정된 국가의 미세먼지(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을 반영함(안 별표 1 및 2)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대기오염 예측·발포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 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이 변경(강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동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PM2.5 및 PM10)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의 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민,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음.
- 이에 2017년 6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시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서울형 PM2.5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으며, 지난 3월 PM2.5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제8조의2),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농도기준 및 조치사항(별표 4)을 동 조례에 반영한 바 있음.
(’18.3.22 개정)

2)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 등 삭제(안 제8조의2, 별표 4) 및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 및 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18.3.27)에 따라 PM2.5 환경기준¹⁾이 강화되었고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18.3.27)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8.6.28) 개정에 따라 국가의 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주의보, 경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강화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자체 도입·시행하고 있는 민감군 주의보 발령 농도기준과 동일한 수치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상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u>75</u> µg/m 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u>35</u> µg/m ³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u>150</u> µg/m 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u>75</u> µg/m ³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따라서 PM2.5 환경기준과 국가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강화된 만큼 동 조례에 별도의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1) 연평균농도 25 → 15µg/m³ / 일평균농도 50 → 35µg/m³

PM2.5의 농도기준 및 조치사항, 민감군 주의보 발령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강화된 국가의 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을 조례에 반영(별표 1, 2)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 개정 현황〉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p> <p>가. 미세먼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예보내용</th> <th colspan="4">등급</th> </tr> <tr> <th>좋음</th> <th>보통</th> <th>나쁨</th> <th>매우나쁨</th> </tr> </thead> <tbody> <tr> <td>미세먼지 (PM-2.5)</td> <td>0~15</td> <td>16~50</td> <td>51~100</td> <td>101 이상</td> </tr> </tbody> </table>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p>[별표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p> <p>가. 미세먼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예보내용</th> <th colspan="4">등급</th> </tr> <tr> <th>좋음</th> <th>보통</th> <th>나쁨</th> <th>매우나쁨</th> </tr> </thead> <tbody> <tr> <td>미세먼지 (PM-2.5)</td> <td>0~15</td> <td>16~35</td> <td>36~75</td> <td>76 이상</td> </tr> </tbody> </table>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p>[별표 2]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물질</th> <th>경보단계</th> <th>발령기준</th> <th>해제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미세먼지 (PM-2.5)</td> <td>주의보</td> <td>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td> <td>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td> </tr> <tr> <td>경보</td> <td>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td> <td>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td> </tr> </tbody> </table>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별표 2]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물질</th> <th>경보단계</th> <th>발령기준</th> <th>해제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미세먼지 (PM-2.5)</td> <td>주의보</td> <td>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td> <td>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mu\text{g}/\text{m}^3$ 미만인 때</td> </tr> <tr> <td>경보</td> <td>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td> <td>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td> </tr> </tbody> </table>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 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